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47

2020. 11. 25.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8월 12일, 이병도 의원 외 13명

나. 회부일자 : 2020년 8월 21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2020.11.2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 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이병도 의원)

1. 제안이유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노력을 기울인 기업을 지정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민간사업장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도 근거 신설(안 제11조 신설).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개정안은 노동자의 안전과 산업재해 예방에 앞장서는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을 통해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 강화와 함께 민간 사업장에 대해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동기를 부여하고자 발의되었음.

나. 서울시 산업안전 정책 현황

- 우리나라는 2019년 한해에만 산업재해로 2,020명¹⁾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산업재해 사망률이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어 산업 및 노동 안전을 위한 인식 확산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서울시는 2019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산업안전팀'을 신설하고 산업노동안전 기본계획을 발표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개정 이후 조례 제정(2019.12.18.)을 통해 산업안전 정책에 대한법・제도적 근거를 신설하였음.

¹⁾ 사고 사망자 수 855명, 질병 사망자 수 1,165명 (2019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고용노동부)

 그러나 노동안전조사관의 선발,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의 수립(예정)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지역 노동환경을 반영한 실효성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안 제11조 신설)

- 안 제11조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사업에 적극 협력한 기업을 서울형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10명 미만의 영세민간사업장은 위험에 취약한 사업체임에도 불구하고²⁾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산업안전에 대한 법·제도적 책임에서 벗어나 있으며, 여전히 노동현장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현실임.
- 이에 개정안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분야의 우수기업에 대한 혜택을 마련함으로써 기업 스스로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대한 책임감을 제고하도록 동기부여하는 입법적 효과가 기대됨.
- 경기도는 올해부터 25개의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을 인증하고 노동 환경개선자금을 지원(최대 500만원)하는 신규사업을 추진 중이며, 경상 남도 또한 조례에 우수기업 선정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²⁾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발생현황(2019)에 따르면, 5명 미만 사업체의 재해율은 1.15%, 50명 미만 사업체의 재해율은 0.60%로 전체 평균 0.58%를 상회하였고, 종사자 수가 많은 사업체일수록 재해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우수기업 포상 외에 경기도는 ▶경영지원자금 지원, ▶지방세 감면, 경상남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우대지원 등의 혜택을 명시하고 있음.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7조(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도지 사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경기 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1. 경기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 2. 경영지원자금 지원
- 3. 지방세의 감면
- 4. 그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6조(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산업재해예방등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포상
- 2.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우대지원
- 3.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재해예방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기준은 도지사가 정한다.
- 이밖에 개정안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포괄 규정하고 있어 우수기업으로서의 인센티브 제공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바, 서울시의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 해볼 필요가 있음.
- 다만 현재 조례의 적용대상3)이 서울시와 소속기관 및 그 자회사로 한정되어 있어 우수기업 인증에 대한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바, 향후 민간으로의 적용대상 확대를 통해 개정안의 당초 취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입법적 고민이 필요함.

³⁾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의 노동자 및 그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시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과 그 자회사

- 이들 적용대상기관에 대해서는 시장의 책무(제5조), 노동안전조사관의 지도점검(제7조), 사업주의 협조(제8조) 등의 조항에서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대상을 민간부문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관계법령의 위임이 존재하지 않아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음.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요지

가. 수정이유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의 적용대상을 민간영역까지 확대하고자 함.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적용대상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환경 취약 분야의 노동자 및 사업주.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신설함(안 제3조제3호 신설)

Ⅵ.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Ⅲ.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관련 1847 제안년월일 : 2020년 11월 25일

제 안 자: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의 적용대상을 민간영역까지 확대하고자 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적용대상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환경 취약 분야의 노동자 및 사업주.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신설함(안 제3조제3호 신설)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환경 취약 분야의 노동자 및 사업주.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제3조(적용대상)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대상) (개정안과
적용은 다음 각 호의 기관		같음)
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의		
노동자 및 그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1.~2. (현행과 같음)	1.~2. (개정안과 같음)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시의 공사·공단 및 출		
자・출연기관과 그 자회사		
	<u>〈신 설〉</u>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노동환경
		취약 분야의 노동자 및 사
		업주. 다만, 주민의 권리 제
		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환경 취약 분야의 노동자 및 사업주.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서울형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서울형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를 제12조부터 제21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은 다음	제3조(적용대상) (현행과 같음)
각 호의 기관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의 노	
동자 및 그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1.~2. (현행과 같음)
소속 행정기관	
2. 시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과	
그 자회사	
<u>〈신</u> 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환경 취약 분야의 노동자 및 사업주.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u>〈신</u> 설〉	제11조(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서울형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u>수 있다.</u>
	② 서울형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u>제11조~제20조</u> (생 략)	<u>제12조</u> ~ <u>제21조</u> (현행 제11조~제20조와
	같음)